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70

제안연월일 : 2005. 6. 29.
제 안 자 : 국회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04년 6월 28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8월 25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4년 9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함.

다. 2004년 11월 6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8일과 4월8일 유정복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4월 6일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각각 우리 특별위

원회에 추가로 회부됨.

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6일 제1차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5년 6월 13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7건의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마. 2005년 6월 20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0차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의 국회 제출서류 중, 소득세 등의 납부실적은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체납실적을 포함하며,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에는 직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의 후보자 도달 기한을 청문회 개회 4일전에서 5일전으로 하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시한을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함(안 제7조제6항).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가”를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로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중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이라 한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국가정보원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국가정보원장등”을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등을 임명할 수 있다”를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 또는 지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6항 후단중 “4일전”을 “5일전”으로, “24시간전”을 “48시간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국가정보원장등”을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임명권자”를 각각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1.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2. (현행과 같음)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생 략) 1.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3. (생 략) 4.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 등)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국가정보원장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재판관등----------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⑤ (생략)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4일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5일전----------48시간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정보원장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헌법재판소 재판관등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②----------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